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태권도공원 내 의료 인력 배치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27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태권도공원 내 의료 인력 배치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2. 제 출 일: 2025. 3. 21.
3. 회 부 일: 2025.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권도공원에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태권도공원은 체육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전시시설 등이 공존하는 복합시설로, 태권도 보급·연구·전시·수련, 지도자 양성 등 역할을 합니다. 연간 방문객이 22년 24만 명, 23년 31만 명, 24년 29만 명이지만, 응급상황에 대처할 인력이 없습니다. 근거리에 의료시설도 없습니다.

이에 태권도공원 내에 의료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태권도공원 내 의료 인력 배치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태권도공원 내 의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①·② (생략) <u><신설></u>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공원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을 둘 수 있다.</u>

다. 검토의견

- 현행법상 태권도공원은 태권도 경기장, 연수·수련·체험장, 숙박시설, 박물관 등이 모여 있는 태권도 복합공간으로, 태권도 체험, 트레킹, 겨루기 등 활동성이 강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음.
- 이에 활동 중 경미한 부상 등 태권도공원 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¹⁾ 태권도공원 인근 설천면 보건지소

(1.5km)에는 상주 의료인이 없고, 무주보건의료원(15km)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는 등 탈골 및 골절의 전문적 치료를 위해서는 인근지역(대전 등)으로 이동해야하는 실정임²⁾.

○ 이에 개정안은 태권도공원 내 의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태권도공원 내 자체 의료 인력 배치 필요성에 대한 관계 부처·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³⁾, 법률 해석상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 인력’을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음⁴⁾.

1) [참고자료1] 태권도공원 내 사고 발생 현황

2) [참고자료2] 태권도공원 인근 의료시설 현황(25.3.31.기준)

3) <관계 부처·기관 의견>

○ 기획재정부: 보건당국이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충남대병원, 대전보훈병원, 국군대전병원, 전북대병원 등 태권도공원에서 약 1시간 거리 상급병원) 이용 가능, 태권도공원(年 30만명)보다 연간 방문객이 많은 올림픽공원(年 1천만명)도 별도 의료인력을 배치하고 있지 않음, 간단한 의료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채용된 ‘보건관리자’(의사, 간호사 등)가 처리 가능 등을 고려할 때, **태권도공원 내 별도 의료인력 배치 필요성 낮음**

○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는 겨루기, 품새 등 신체활동이 활발한 무예이고, 태권도공원 체험객에게 계절성 질환 및 타박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나 자체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보건의료환경 마련 필요**

4)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 참고로, 「의료법」이 아닌 타 법령에 의료인 등 배치 규정을 둔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의료인 등 배치 관련 유사 입법례]

배치 장소	근거 법률 및 주요 내용
체육시설업(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수영장)	○ 안전·위생 기준 준수(「체육시설법」 제24조) ○ <u>간호사/응급구조사</u> 등 의무 배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
선수촌 등	○ '선수관리 담당자' 임의 배치(「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4) -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에 등록 ○ 자격 및 업무 범위(「법 시행규칙」 제30조의6) - 자격: 체육지도자/물리치료사/<u>의사/한의사/간호사</u>/기타 - 업무: 선수의 건강 관리, 체력증진 및 관리, 운동 후 회복, 운동능력 향상 업무 등
워터파크 (‘물놀이형 유원시설’)	○ 안전·위생기준 준수(「관광진흥법」 제32조) ○ 의무 시설에 <u>간호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u> 의무 배치(「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및 [별표10의2])
학교	○ <u>의료인/약사</u> 임의 배치(「학교보건법」 제15조제1항) ○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의무 배치(「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 <u>간호사</u> 면허 보유 시 의료행위 가능(「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본 법률 개정 없이 태권도공원 내 의료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은 직접 채용 또는 위탁 운영이 있음.

- 경륜·경정 선수동 의무실 등은 개별법상 의료 인력 배치 근거 없이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 있음⁵⁾.

[의료 인력 배치 방식⁶⁾]

방식	절차
직접 채용	태권도원 내 의료기관 개설 관련 무주군수 신고/전북도지사 허가 신청 → (허가) 전북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후 개설 허가 통보 → 태권도공원 내 의료기관(시설) 설립 → 의료 인력(의사) 채용
위탁 운영	태권도공원 내 의무실(및 의료인 배치) 위탁운영 용역 입찰 →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및 의무실(및 의료인 배치) 운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 의 처

02)6788-5375

5) [참고자료4] 근거 법률별 의료 인력 운영 사례

6)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각 호 생략)

[참고자료1] 태권도공원 내 사고 발생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2023년, 2024년 태권도공원 내 사고 발생 현황

연도	내 용
2023	숙박 중 벽에 부착된 액자가 낙하되어 얼굴을 충격하는 사고
	동방고 여학생 정수기 온수를 실수로 쏟아 화상 입음
	버스 맨 앞좌석에서 미끄러져 엄지발가락 부상 사고
	태권도 봉사단 면접연습 발차기 중 오른쪽 골반 탈구
	열린 사물함 문에 머리를 찍힘 사고(출혈 발생)
	박물관에서 T1공연장으로 이동 중, 보도블럭 단차로 인해 전도된 사고
	충남중 학생이 화장실 이용 중 발생한 미끄럼 사고(손목 부상)
	태권도원 숙박객 복통 호소 환자 발생으로 무주 의료원 응급 후송(2건)
	힐링태권체조 참여 과정 중 동료 발에 밟혀 발가락 골절
	체육지도자 구슬시험 발차기 연습중 왼쪽 발목 아킬레스건 파열
	체육지도자 구슬 시험 발차기 연습중 왼쪽 무릎 골절
	초급코스 막고 통과하기 체험 중 3번째 봉에 부딪혀 발생한 통증
	산책 도중 넘어져 오른쪽 팔꿈치 부상
	순환버스 운행 중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소화기에 허리를 부딪힘
	에어킥태권도 스킬업 캠프 훈련 중 점프 후 착지과정에 오른팔 부상 발생
	발차기 연습 도중 넘어져 머리쪽 부상 발생
	태권도원 숙박객 중 고열 환자 발생으로 의료원 응급 후송(2건)
	태권도 시범을 만들어보자 콘텐츠 운영 시 이단발차기 중 왼쪽 발목 접질림 사고
	태권힐링체조 프로그램 활동 중 무릎 부상 발생
2024	유성여고 수련활동 중 황원교에서 넘어져 발목 부상 발생
	태권도원 고객 중 감기환자 발생으로 무주의료원 응급 후송(2건)
	야외 운동장에서 활동 중 주변이 어두운 상황에 달리다가 둔턱에 걸려 넘어짐
	대전내동중학생이 숙소 문을 닫는 과정에서 발가락 사이가 찢어져 5바늘 봉합
	태권도원 숙박객 복통 호소 환자 발생으로 무주 의료원 응급 후송
	플레이원 체험 중(그물잡고 이동하기)에서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가는 사고 발생
	운동장에서 도약센터 이동 중 발을 헛디뎈 발목이 접질리는 사고 발생
	도약관에서 아이가 넘어져 인대 손상
	대구남부교회 수련활동 중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 부상
	강호태권도 수련캠프 중 태권매트 사이에 엄지발가락이 끼어 골절상
	사범연수 연수생이 야간(23시경)에 전망대에서 산책로를 통해 모노레일로 이동 중 유해동물(뱀 또는 지네)에 물리는 사고 발생
	전주 초포초 학생이 레크레이션 활동 중 발을 헛디뎈 발톱이 들리는 사고
	대전 만년중 학생이 수련활동 중 매트에 걸려 엄지발가락이 비틀리며 부상
	청주여고 학생이 객실에서 신발착용 중 넘어져 무릎 부상 발생
	대전여고 학생이 잔디운동장에서 수련활동 중 발목이 접질리는 사고 발생
	대전여고 학생이 장기자랑 중 무릎, 발목이 다치는 사고 발생

[참고자료2] 태권도공원 인근 의료시설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현황) (25.3.31.기준)

- 태권도공원(무주 설천면 위치) 인근, 설천면 보건지소(1.5km)에는 상주 의료인이 없으며(일반의 1인의 주 2회 출장 진료), 무주보건의료원(15km)*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음

* 무주보건의료원 전문의 현황('25.3.31.기준): 총 7명(내과(1), 성형외과(1), 소아 청소년과(2), 재활의학과(1), 마취통증의학과(1), 치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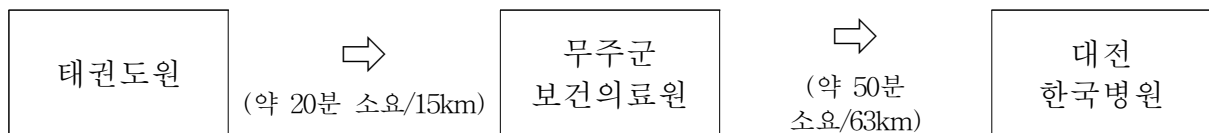
- 태권도 활동에서 많이 발생하는 탈골 및 골절의 전문적 치료를 위해서는 인근지역(대전 등)으로 이동필요

※ (사례)

- '24년 10월 태권도원 청주시 소재 고등학교 학생의 부상 발생 (22:50) → 119 구급대 차량 태권도원 입차(22:57) → 환자 이송 (23:19) 및 도착(00:20)

* 무주군 보건의료원 진료 불가로 대전 한국병원 후송

☞ 사건 접수 후 최종 의료 소재지까지 총 1시간 10분 소요



※ 무주군과 인근 시·도지역 간 미충족 의료율* 비교('25. 1. 기준)

지역명	2022년	2023년	2024년	3개년 평균
무주군	5.7	7.3	5.0	6
영동군	9.2	3.2	5.4	5.9
대전광역시	3.5	4.3	3.3	3.7
서울특별시	3.8	4.4	4.4	4.2

*주) 미충족 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2024, 2025.03.31. 중 '미충족의료율(시도/시/군/구)'

[참고자료3] 법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국회입법정책처 비용추계 결과(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건비	의사 (1명)	160	160	160	160	160	800
	간호사 (2명)	100	100	100	100	100	500
운영비		100	1.5	1.5	1.5	1.5	106
합계		360	261.5	261.5	261.5	261.5	1,4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자료4] 근거 법률별 의료 인력 운영 사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직접 채용

운영 형태	기관명	현 황
「의료법」상 의료기관 등록	대한체육회	• 평창동계훈련센터 <예시> • 전문기술직 7급(간호사) 공개채용 - 자격: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중 면허증 취득 후 임상경 력 1년 이상 보유자 • 메디컬센터(진천) * 태릉선수촌: 현재 의료인력 없음
		• 보건실 운영 및 안전보건관리 직무 공개채용 - 자격: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 총 6명(생태센터, 미래환경센터, 해양센터, 우주센 터 등 보건실 운영 상주 직원 각 1명)
「산업안전 보건법」상 '보건관리자'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 보건관리자 업무, 건강관리·건강증진 지도·건강상담 업무 보조 등(8급 무기계약직) - 자격: 산업보건지도사·의사·간호사 등 면허 취득자
	예술의전당	• 보건관리자 업무, 건강관리·건강증진 지도·건강상담 업무 보조 등(8급 무기계약직) - 자격: 산업보건지도사·의사·간호사 등 면허 취득자

□ 의료인력 위탁운영 - 예) 경륜·경정 선수동 의무실('25년 예산: 260백만원)

시설	기간	인력배치	근무시간	비 고
경륜 의무실	경주 전일 (목)	•의사(1명)	9시~12시	○개최전일 출전검사 완료시 까지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1명)	9시~18시	○개최기간 광명경륜장 의무실 상근 ○개최일별 출주 전/후 신체검사
	경주일 (금~일)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1명) •기사(1명)(구급차포함)	10시~19시	○의무실 의약품집기 등 운용 관리 ○부상선수 의무실 응급처치 ○중상자 병원 후송
경정 의무실	지정연습 (화)	•의 사(1명)	8시~9:30	○신체검사 등 출전 적성검사
		•간호사(1명)	8시~16:30	○개최기간 미사리경정장 의무실 상근
		•기사(1명)(구급차포함)	8시~16:30	○부상선수 응급조치
	경주일 (수~목)	•간호사(1명) •기사(1명)(구급차포함)	8시~18:10	○부상선수 병원후송 ○의무실 의약품집기 등 운용 관리

주) 계약대상: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정신병원 제
외)(업종코드 : 5373, 5374, 5375, 5377)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업종코드 : 1523)

※ 한국마사회 - 지사 사업장별 경마지원직(고객구호직) 채용

- 자격: 응급구조사 1·2급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 「의료법」상 의료기관 미등록, 위탁운영 미해당 등 마사회 자체 운영 추정